

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205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전문적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,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대상기관 : 지방공기업평가원
- 나. 사무명 :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
- 다. 추진근거
- 관련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, 동법 시행령 제76조
- 라. 출연 필요성
-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, 임직원 교육, 경영지도·컨설팅, 정책연구 등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도모

마. 주요사업 내용

-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
- 지방공기업(광역+기초)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
- 지방공기업 컨설팅 지원
- 지방공기업 설립·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(법정지정기관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(법정지정기관)
-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

바. 출연대상 기관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, 12-6
- 법인설립 : 1992. 3. 2. ※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('16.6)
- 조 직 : 3실 2센터 / 정원 65명 ※현원 62명
 - 이사회 구성 : 이사 11명, 감사 1명
- 시설현황 : 건물(지상6층) 연면적 2,550 m^2 , 부지 640 m^2
- 위치도



청사현황



위치도

사. 소요예산(안)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78,000천원
- 산출근거 : 경상운영비 50,000천원, 사업비 28,000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, 지방공기업법

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·운영)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이호성(☎2133-6779)